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·기술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정

1996년 9월 13일 리마에서 서명 1996년 11월 11일 발효

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(이하 "체약당사자"라 한다)는.

남극에서의 과학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 · 확보하기 위한 남극조약의 정신에 유념하며,

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남극에 관한 체약당사자간 경험의 교환을 정례화하기를 희망하여.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이 협정의 집행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연구소가 되며 페루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남극위원회가 된다.

제 2 조

제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과 과학·기술 및 보급의 교류를 촉진한다.

- 1. 과학자, 기술자 및 지원인력의 교환
- 2. 공동과학조사 및 기술개발사업의 시행
- 3. 과학·기술회의, 세미나 및 회합의 조직 및 참가
- 4. 과학·기술 및 보급에 관한 정보의 교환
- 5. 상호협의와 경험의 교환을 제공하고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방법

제 3 조

- 1. 체약당사자가 승인하는 공동조사사업은 1년간 계속되며 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 남극위원회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2. 과학회의, 세미나 및 회합은 2주의 기간을 넘지 아니한다. 특정 보급과정의 경우, 파견국이 그 기간을 결정한다.

제 4 조

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자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, 각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조정한다.

제 5 조

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가 최초로 공동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할 특정 관심분야는 다음과 같다.

- 1. 해양과학 분야: 해양생물학, 해양물리학, 해양화학, 음향학 및 해양오염
- 2. 지구과학 분야: 지질학
- 3. 대기 · 우주과학 분야: 기상학(기후학과 종합관측기상학) 및 천체물리학
- 4. 생명과학 분야: 인체생물학
- 5.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분야

제 6 조

- 1. 과학·기술 및 보급 협력과 제2조에 따라 제공되는 제반 교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, 파견국은 제안된 활동이 개시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그 활동의 개시일과 종료일 뿐만 아니라 인원과 작업프로그램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접수국에게 제공 한다.
- 2. 접수국은 제안을 접수한 날자로부터 45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를 필요한 수정제안과 함께 명시하여 회신한다.

제 7 조

체약당사자간 합의되는 재정관련사항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.

- 1. 파견국은 그 인원에 대한 국제 왕복여비를 지불하고, 접수국은 파견국에서 파견한 인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여비를 부담한다.
- 2. 접수국은 유사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한다.
- 3. 각 체약당사자는 양 당사자간 합의된 활동수행 도중, 사고, 사망 또는 신체불구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자국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.
- 4. 체약당사자간의 상호합의로 기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8 조

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파견되는 인원은 그들에게 지정되는 접수국 기관의 행정규칙을 준수한다.

제 9 조

한국해양연구소와 국가남극위원회는 연간 활동계획에 대하여 합의한다.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간 매년 상호합의하는 일자에 회의를 개최한다. 이 회의의 의장 직은 체약당사자간 교대로 수행하며 의장은 회의관련 사항을 적절히 통보할 책임을 진다.

제 10 조

- 1.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타방 체약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.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 가 이 협정 종료의사를 협정만료일 6개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, 동 기간 동안 자동 연장된다.
- 2. 제1항의 조건은 이미 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하며, 이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.

1996년 9월 13일 리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,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 작성하였다.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